

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[펀드코드: B4708]

|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[보통 위험] | | | | | |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1 | 2 | 3 | 4 | 5 | 6 | |
| 매우 높은 위험 | 높은 위험 | 다소 높은 위험 | 보통 위험 | 낮은 위험 | 매우 낮은 위험 |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,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 을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가격변동위험, 원본손실위험, 시장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
이 요약정보는 **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**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·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**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**

[요약정보]

| | |
|-----------|---|
| 투자목적 및 전략 | <p>1. 투자목적</p> <p>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%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※ 비교지수(벤치마크) : KOSPI 35% + 매경BP종합(국공채) 40% + 매경BP종합(A-이상 회사채 2~3년) 20% + Call 5%</p> <p>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,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,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2. 투자전략</p> <p>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%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, 채무불이행, 파산, 신용등급 하락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 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</p> <p>※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</p> <p>◆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[채권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 등을 주된 투자 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•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. •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드레이션*을 결정한 후,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률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,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. |
| | |

•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,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
※ 듀레이션(Duration)이란, 채권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, 금리가 변동하는 데 따른 채권가격의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.

◆ 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▪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.

▪ 철저하게 분업화 된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에 의한 실사 중심의 리서치와 상향식(Bottom-up)투자※ 방식의 기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합니다.

▪ 상향식(Bottom-up)투자※방식에 근거한 일관된 투자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모델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운용합니다.

▪ 기본적 분석과 함께 하향식(Top-down)투자※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, 자산 배분 전략 보다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선정에 역량 집중합니다.

▪ 단기적인 시황관에 근거한 적극적인 주식편입 비율의 조정은 지양하며, 중대한 시장 모멘텀 변화시 주식편입비중을 조절합니다.

▪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,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.

※ 상향식(Bottom-up)투자 : 개별 주식에 대한 조사,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, 경제 사이클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에 기초하여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

※ 하향식(Top-down)투자 : 개별 주식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및 업종에 대한 자산배분을 하고, 그 안에서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

※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[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분류

투자신탁, 증권(혼합채권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모자형, 종류형

| 투자비용 | 클래스 종류 |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 (연간, %) | | | | | 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·비용 예시(단위:천원)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| | 판매 수수료 | 총 보수 | 판매 보수 | 동종유형 총보수 | 총보수·비용 | 1년 | 2년 | 3년 | 5년 | 10년 |
| | 수수료선후-오프라인형(A) | 납입금액의 0.7% 이내 | 0.9925 | 0.5000 | 0.82 | 0.9925 | 171 | 275 | 384 | 614 | 1,274 |
|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형(C) | 없음 | 1.3925 | 0.9000 | 1.18 | 1.3925 | 143 | 291 | 444 | 767 | 1,680 |
| | 수수료선후-온라인형(A-E) | 납입금액의 0.35% 이내 | 0.7425 | 0.2500 | 0.63 | 0.7425 | 111 | 190 | 272 | 447 | 953 |
| 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형(C-E) | 없음 | 0.9425 | 0.4500 | 0.81 | 0.9425 | 97 | 197 | 302 | 524 | 1,162 |
|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2 (연금저축)) | 없음 | 0.9225 | 0.4300 | - | 0.9259 | 95 | 194 | 296 | 515 | 1,142 |
| 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-P (퇴직연금)) | 없음 | 0.9725 | 0.4800 | - | 0.9725 | 100 | 203 | 311 | 540 | 1,197 |

(주1) '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'는 투자자가 1,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·비용(판매수수료+총보수비용(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))을 의미합니다. 선취판 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,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, 연간 투자수익률은 5%로 가정하였습니다.

(주2) [A형과 C형], [A-E형과 C-E형]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[약1년8개월], [약1년4개월]이나, 이는 추가납입,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| | <p>(주3)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[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(주4)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.</p> <p>(주5)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(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)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|
| 투자실적 추이 (%, 연평균 수익률) | | 종류 | 최초 설정일 | 최근 1년 | 최근 2년 | 최근 3년 | 최근 5년 | 설정일이후 | | | | | |
| | | | | 21.04.01 ~ 22.03.31 | 20.04.01 ~ 22.03.31 | 19.04.01 ~ 22.03.31 | 17.04.01 ~ 22.03.31 | | | | | | |
| | | 수수료선취- 오프라인형(C) | 2015.08.07 | -5.31 | 8.24 | 4.07 | 2.74 | 1.17 | | | | | |
| | | 비교지수 | | -4.72 | 8.12 | 3.81 | 3.03 | 2.79 | | | | | |
| | | 수익률 변동성 | | 5.06 | 6.82 | 7.64 | 6.79 | 6.64 | | | | | |
| <p>(주1)비교지수: KOSPI 35% + 매경BP종합(국공채) 40% + 매경BP종합(A-이상 회사채 2~3년) 20% + Call 5% (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)</p> <p>펀드의 비교지수는 설정일로부터 2016.09.29까지 KOSPI 40% + 매경BP지수 국공채 1년 60%를, 2016.09.30부터 현재 까지 KOSPI 35% + 매경BP종합(국공채) 40% + 매경BP종합(A-이상 회사채 2~3년) 20% + Call 5%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</p> <p>※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</p> <p>(주2)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.</p> <p>(주3)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,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운용 전문인력 | | 구분 | 성명 | 생년 | 직위 | 운용현황 |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(국내혼합채권형, %) | | | | | | |
| | | | | | | 집합투자 기구 수(개) | 운용규모 (억원) | 운용역 | 운용사 | 운용 경력 년수 (년) | | | |
| | | 책임 (주식) | 임창훈 | 1983 | 차장 | 2 | 744 | - | -4.04 | 8.78 | 5.8 | | |
| | | 책임 (채권) | 한희진 | 1968 | 상무 | 12 | 6,476 | -4.50 | 9.38 | -4.04 | 8.78 | 18.5 | |
| | | 부책임 (주식) | 최용 | 1981 | 부장 | 3 | 4,385 | - | -4.04 | 8.78 | 11.9 | | |
| <p>(주1) 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, '부책임운용전문인력'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.</p> <p>(주2)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주3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</p> <p>(주4)'운용경력년수'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.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•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•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,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
|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<p>※ 추가적인 투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'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'를 참고 바랍니다.</p> |
|--|---|

| 주요 투자위험 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|
|---------|-----------|--|
| | 주식가격변동 위험 |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. 즉,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,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,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| | 원본손실위험 |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|
| | 시장위험 |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. 경제성장률, 환율,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|

| | | | |
|-------|---|------|---|
| 매입방법 |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(D+1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 환매방법 |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4영업일(D+3)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제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|
| 환매수수료 | 없음 | | |

| | | |
|-----|------|--|
| 기준가 | 산정방법 | - 당일 기준가격 = (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– 부채총액) /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-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|
| | 공시장소 | 판매회사 본·영업점, 집합투자업자 (https://www.eastspring.com/kr) · 판매회사 ·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(dis.kofia.or.kr)에 게시합니다. |

| 과세 | 구 분 | 과세의 주요내용 |
|----|--------|---|
| | 집합투자기구 |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|
| | 수익자 | <p>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.4%(지방 소득세 포함)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단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·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, 주식 배당,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-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(이자소득 및 배당소득)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|

| | ※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|--|------|--|------------|---|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|------|--|
| 전환절차 및 방법 | 해당사항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집합투자업자 |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㈜ 대표번호: 02-2126-3500 / 인터넷 홈페이지 : https://www.eastspring.com/kr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모집기간 |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| 모집. 매출 총액 | 1조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효력발생일 | 2022년 04월 21일 | 존속 기간 |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판매회사 | 집합투자업자(https://www.eastspring.com/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참조 |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[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-판매경로-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,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집합투자기구의 특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판매 수수료</td> <td>수수료 선취(A)</td> <td>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후취 (S)</td> <td>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미징구(C)</td> <td>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판매경로</td> <td>온라인(E)</td> <td>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td> </tr> <tr> <td>오프라인</td> <td>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</td> </tr> <tr> <td>온라인 슈퍼 (S)</td> <td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기타</td><td>무권유저비용 (G)</td><td>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 <tr> <td>개인연금(P2)</td><td>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 <tr> <td>퇴직연금(P)</td><td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 <tr> <td>펀드, 전문투자자 등(F)</td><td>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td></tr> <tr> <td>랩(W)</td><td>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구 분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| | 판매 수수료 | 수수료 선취(A)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수수료 후취 (S) |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수수료 미징구(C)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판매경로 | 온라인(E)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 오프라인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 온라인 슈퍼 (S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기타 | 무권유저비용 (G) |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개인연금(P2)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퇴직연금(P)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펀드, 전문투자자 등(F) |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랩(W) |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 |
| 구 분 |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판매 수수료 | 수수료 선취(A) |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(C)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수수료 후취 (S) |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수수료 미징구(C) |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(A), 판매수수료후취형(B)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(AB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(A)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8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. 따라서 1년8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(A)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판매경로 | 온라인(E) |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오프라인 | 오프라인전용(판매회사 창구)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온라인 슈퍼 (S) |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타 | 무권유저비용 (G) |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개인연금(P2) |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퇴직연금(P) |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펀드, 전문투자자 등(F) |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랩(W) |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
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| 고액(I) | 납입금액 5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|
| ※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[제2부 11. 매입, 판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.(2) 종류별 가입자격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[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]

- 증권신고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
- 투자설명서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,
집합투자업자(<https://www.eastspring.com/kr>)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
- 정기보고서(영업보고서, 결산서류)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및
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
- 자산운용보고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<https://www.eastspring.com/kr>)
- 수시공시 :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dis.kofia.or.kr)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(<https://www.eastspring.com/kr>)